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4.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3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3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3. 31)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철)

### 가. 제정이유

-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에 기여가 많은 내·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영등포구 명예주민증을 수여받은 명예주민이 우리 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명예주민증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방법 및 부상 수여를 명시(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명예주민 관리, 명예주민증 취소 규정을 명시(안 제6조, 안 제7조)
- 명예주민증수여 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 수당 등 명시(안 제 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조례 제정은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교류 협력과 우호증진, 그리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며,
- 명예구민증 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고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칭송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자는 의미로 수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심과 제도시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4. 修正案 要旨

#### 가. 수정이유

- 명예구민증 취소자에 대한 취소통지를 함으로써 명예구민증 수여자와 취소자 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7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

###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번호	129
----------	----------	-----

제안년월일 : 2008. 4.

제 출 자 : 윤준용 위원

## 1. 수정이유

- 명예주민증 취소자에 대한 취소통지를 함으로써 명예주민증 수여자와 취소자 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음.

## 2. 주요골자

- 안 제7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주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주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명예구민증 취소)</p> <p>①-② (생 략)</p> <p>③ (신 설)</p>	<p>제7조(명예구민증 취소)</p> <p>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9 호
----------	---------

제출년월일 : 2008.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에 기여가 많은 내·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방법 및 부상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명예구민 관리, 명예구민증 취소(조례안 제6조, 제7조)

다.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자치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8. 2. 4 ~ 2.2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 라 한다)의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 영등포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영등포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기관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영등포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기타 영등포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